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03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범위 상향 (임광현의원안)	3

I. 개요

1.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20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광현의원 등 31인

(2) 제 안 일 : 2024. 9. 24.

(3) 회 부 일 : 2024. 9.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한편 현행법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본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천만원의 기본공제액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본공제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은 과세요건인 과세표준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과세요건법정

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8 제1항제1호 및 제126조의4제4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범위 상향 (임광현·정태호의원안)

법률 제17757호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개 정 안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제87조의18) ○ <u>5천만원</u> 공제대상 금융투자소득 - 국내 상장주식의 장내 양도로 발생한 소득 - 중소기업·중견기업 비상장 주식의 K-OTC 시장을 통한 장외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이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 250만원 공제 금융투자소득 - 기타 금융상품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제126조의4) ○ 국외전출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 - 연 <u>5천만원</u>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공제	☐ <u>공제범위 상향</u> ○ <u>1억원</u> 공제대상 금융투자소득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연 <u>1억원</u>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공제

* 임광현의원안 2024. 9. 24. 발의(의안번호 4203),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67)

☐ 2건의 개정안은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에서는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두 분류로 나누어 기본공제 금액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국내 주식등의 장내거래,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 K-OTC 거래,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하 “국내

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5천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그 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250만원을 공제함.

이는 국내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금액과 그 외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본공제금액을 적용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지니고 있음.¹⁾

□ 개정안은 국내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세부담이 완화되는 주식투자자의 폭을 넓혀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개인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응능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천만원 초과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어 세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일한 담세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억원원까지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음.

둘째, 1억원의 공제액은 대부분의 국내 주식투자자를 과세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도록 하는 것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위배되어 조세로 인한 왜곡,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1)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03324호), 2020. 11.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당시 5천만원의 공제액 적용에 대해서도 대략 97.5%의 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좁은 세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조세왜곡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²⁾

셋째,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은 250만원, 근로소득은 2천만원, 연금소득은 9백만원이 최대 공제금액임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의 공제금액은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57

2)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03324호), 2020. 11.